

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8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서보영 의원 외 9명(박종길, 임미연, 박정환, 권숙자, 황국주, 강한곤, 이영빈, 장호섭, 김해철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9. 18.)

2. 재정이유

-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급식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폐암검진 주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 및 제4조의2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9. 3. ~ 9. 15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조례안은 조리흡 등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시키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달서구는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내에 환기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고, 급식종사자의 폐암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.
- 주요내용으로
 -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,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, 급식기구 설치 시 고려할 사항,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 -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폐암검진 주기를 2년으로 하고,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스입자의 혼합물인 조리흡이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, 2021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.

- 우리 구청 내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며,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